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8

# 의 정 부 지 방 법 원

## 제 1 2 민 사 부

## 판 결

| | |
|---|---|
| 사 건 | 2015가합54575 소유권이전등기 |
| 원 고 | [redacted]시 |
| 피 고 | [redacted]공사 |
| 변 론 종 결 | 2016. 5. 18. |
| 판 결 선 고 | 2016. 6. 29. |

## 주 문

1. 피고는 [redacted] 주식회사로부터 22,940,410원을 지급받은 다음 [redacted] 주식회사에게,

가. 별지2 목록 기재 각 압류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나.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1 기재 압류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별지1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
각 2011. 8. 3.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3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8

# 청 구 취 지

피고는 [redacted] 주식회사(이하 '[redacted]씨'라고 한다)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. 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압류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, 별지1 목록 기재 2.항 내지 4.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1 압류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, 각 2011. 8. 3.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 이 유

## 1. 기초사실

가. [redacted]씨는 [redacted]시 [redacted]리 산 [redacted] 임야 33,849㎡ 및 같은 리 산 [redacted] 임야 24,793㎡(이하 이들을 통틀어 '이 사건 분할 전 토지'라고 한다)에 신마석 [redacted] 아파트(현재 명칭, 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고 한다)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, 피고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.

나. [redacted]씨는 2007. 11. 7.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분양신탁계약(이하 '이 사건 신탁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① 이 신탁의 목적은 [redacted]씨가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, [redacted]씨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을 한 피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(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8

다)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·분양 및 처분(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)하는 데 있다(2조).

②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[redacted]씨 및 [redacted]씨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피고로 하고,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(12조, 13조).

③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(신탁사업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,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, 등록세 및 공과금 등) 및 등기비용, 기타 위 비용에 준하는 비용,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 등은 [redacted]씨가 지급하되 [redacted]씨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분양보증을 한 피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경우에는 피고가 지급한다(17조).

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, 신탁사무 처리상 피고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피고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[redacted]씨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(18조).

⑤ 신탁계약은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종료한다(22조).

다. 피고는 2007. 11. 8.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[redacted]씨는 그즈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, 2011. 7.경 사용승인을 받아, 같은 해 8.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, 그즈음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.

라. 2011. 4. 7.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[redacted]리 산[redacted] 임야 33,849㎡는 별지1 목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8

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같은 리 산[redacted], [redacted], [redacted]로, [redacted]리 산[redacted] 임야 24,793㎡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마석우리 산3-12로 각 분할되었다.

마. [redacted]씨의 채권자들은 [redacted]씨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압류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호증 내지 제3호증,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**2. 판단**

**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**

**1) 관련 법리**
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,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,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,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. 그렇지만,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8

된다(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8다42615 판결 참조).

**2)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한 판단**

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[redacted]씨가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,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12. 1. 26. [redacted]씨에게 개발부담금 488,673,600원을 납기일 2012. 7. 5.로 정하여 부과한 사실, [redacted]씨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원고가 [redacted]씨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.

**3) 피대위채권 등에 관한 판단**

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그 경우 피고는 [redacted]씨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정한 사실, [redacted]씨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는 2011. 8.경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, [redacted]씨의 채권자들이 [redacted]씨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11. 8.경에는 [redacted]씨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1.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압류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, 별지1 목록 기재 2.항 내지 4.항 부동산에 관하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8

는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1 압류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각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**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**

**1) 피고의 주장**

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재산세,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여 [redacted]씨에 대하여 피고와 [redacted]씨 사이에 체결한 2007. 11. 13.자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에 기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에 따라 임의처분할 수 있다. ② 피고는 위 비용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(이하 '이 사건 자조매각약정'이라고 한다)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할 권한도 있다.

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, [redacted]씨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.

**2) 인정사실**

가)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물인 신탁재산에 관하여 2014년 재산세 4,261,060원 및 2015년 재산세 5,017,650원 합계 9,278,710원을 납부하였고,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2132호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13,625,700원,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 7,151,100원, 그 외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8,469,114원을 각 지출하였다.

나) 피고와 [redacted]씨는 2007. 11. 13. 이 사건 아파트 시공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[redacted]씨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규정이 정하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때에는 그에 관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다(전문)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8

② 피고가 보증한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 없이 피고에게 배상한다(제9조 제1항). 피고가 지급한 체당금,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피고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한다(제10조).

③ [redacted]씨가 이 약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가 사전의 통지와 제반 절차를 생략하고 [redacted]씨와 연대보증인이 피고에 담보로 제공한 제담보물을 언제든지 임의처분하여 피고 채권 및 제부대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다(제12조).

【인정근거】 을 제5 내지 10호증, 제12호증, 제1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**3) 판단**

**가) 주택분양보증약정에 기한 구상채권 부분**

피고와 [redacted]씨가 체결한 주택분양보증약정은 [redacted]씨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책임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의 [redacted]씨에 대한 구상권과 [redacted]씨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임의처분권을 인정하는 약정이라 할 것이다. 그런데, 피고가 위 주택분양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,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이나 소송비용으로서 위 주택분양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이행 혹은 그에 부대하여 부담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,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. 8.경에는 사용승인과 소유권이전 모두 마쳐져 위 주택분양보증약정도 이미 기한이 만료된 상태라서(위 약정 제12조) 그 이후 발생한 위 각 채무들이 위 약정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, [redacted]씨가 위 주택분양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주장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8

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**나)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주장 부분**

**(1)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**

(가) 미래알에이씨와 피고가 위 비용상환청구권 및 이 사건 자조매각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,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신탁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도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사무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, 위 재산세 등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피고는 [redacted]씨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.

이에 대하여,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된 2011. 8.경 이후 8개월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별지 2 목록 순번 1 기재 압류명령을 받았고,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은 그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당하게 지출 내지 부담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, [redacted]씨가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,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 후 8개월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.

(나) 나아가, 미래알에이씨가 상환할 비용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8

① 재산세(주장액 : 9,527,650원, 인정액 : 9,278,710원)

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년도 재산세 4,261,060원 및 2015년도 재산세 5,017,650원 합계 9,278,71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위 재산세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따른 신탁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피고가 신탁사무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, 위 재산세 상당 금액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비용에 해당한다.

피고는 위 금액에 더하여 248,940원을 더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이 보이나,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48,940원이 재산세로 납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2132 사건의 소송비용(주장액 : 13,625,700원, 인정액 : 13,625,700원)

피고가 위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13,625,7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[redacted]씨의 채권자인 A 등 14인이 [redacted]씨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. 11. 5. A 등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A 등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(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2132), 그 판결은 그즈음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된 바 없고,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만을 질 뿐, 그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므로, 그 말소를 구하는 위 사건의 원고들에 대하여 응소하는 데 지출된 비용은 신탁사무 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8

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(비록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된 상태이기는 하였지만, 신탁법 제101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).

③ 이 사건 소송비용(주장액 : 7,151,100원, 인정액 : 0원)

피고가 이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7,151,1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원고가 [redacted]씨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. 그러나, [redacted]씨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권리로서 피고로서는 이에 응함이 상당한데도, 피고가 자신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피고가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해 부담 또는 지출하게 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, 이는 피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할 뿐이라고 볼 것이다.

④ 그 외 소송비용(주장액 : 8,469,114원, 인정액 : 0원)

을 제14호증에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2015다247714호 사건, 2013가합73688호 사건, 2015나2015144호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돈 중 8,469,114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각 사건들에 대한 소송비용이 피고가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(다) 따라서, 피고는 [redacted]씨에 대하여 22,940,410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8

(2) 피고의 [redacted]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거절 가부

수탁자가 신탁종료 후 비용보상 등을 받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(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6다62461 판결),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[redacted]씨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.

다만, 피고는 [redacted]씨로부터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전에는 [redacted]씨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는바, 이와 같은 주장에는 [redacted]씨로부터 비용상환의무를 이행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, 수탁자가 귀속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조매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, 수익자인 미래알에이씨의 비용상환의무는 수탁자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(같은 판결 참조).

(3)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, 피고는 [redacted]씨로부터 22,904,410원을 지급받은 다음 [redacted]씨에게, 별지2 목록 기재 각 압류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1 압류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별지1 목록 제2항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8

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. 8. 3.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**3. 결 론**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승엽

판사 박은희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

재판장
판 사

판사 김준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8

[별지1]

## 부동산 목록

1. [redacted]시 [redacted]읍 [redacted]리 산[redacted] 임야 23,762㎡
2. [redacted]시 [redacted]읍 [redacted]리 산[redacted] 임야 497㎡
3. [redacted]시 [redacted]읍 [redacted]리 산[redacted] 임야 2,719㎡
4. [redacted]시 [redacted]읍 [redacted]리 산[redacted] 임야 2,302㎡. 끝.

[별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8

목록

| 순번 | 사건번호 | 당사자 | 피압류채권 | 청구금액 | 결정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광주지방법원<br>2012타채4932 | 채권자 [redacted] 주식회사<br>채무자 [redacted] 주식회사<br>제3채무자 [redacted] 주식회사 | 채무자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| 86,206,705,405원 | 2012. 4. 10. |
| 2 | 광주지방법원<br>2012타채6386 | 채권자 주식회사 [redacted]<br>채무자 [redacted] 주식회사<br>제3채무자 [redacted] 주식회사 | 채무자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| 4,500,000,000원 | 2012. 4. 26. |
| 3 | 광주지방법원<br>2013타채4461 | 채권자 B<br>채무자 [redacted] 주식회사<br>제3채무자 [redacted] 주식회사 | 채무자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| 263,837,660원 | 2013. 3. 22. |
| 4 | 광주지방법원<br>2013타채5284 | 채권자 C, D, E, F, G, H, I<br>채무자 [redacted] 주식회사<br>제3채무자 [redacted] 주식회사 | 채무자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| 1,532,430,130원 | 2013. 5. 24. |